

「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산림과장)

1. 제안이유

- 강원도 산림소득과-13880(2022.09.23.)호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국·공립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.
- 시설사용료 및 입장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, 기존 시설 사용료의 환불기준을 세분화시켜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·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리자 예약 규정 신설(제 13조)
- 다. 숙박료 감면 규정 신설(제7조 제4항)
- 라.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(제 12조)
- 마. 사용료 징수기준 및 반환기준 정비(별표 2 및 별표 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감사원 감사 결과¹⁾에 따른

‘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운영 권고사항’을 반영하고,

우리 군 운영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,

관리자의 부당 예약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,

군수의 인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,

요금의 징수기준 및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.

이는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

군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쾌적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,

1) 【감사원 지적사항(요약)】

- 공립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숲나들e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,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

검토결과,

입법의 근거 및 필요성이 다분하고 법령 저촉사항 등이 없어
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